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기타 세제 분야

2022.7

삼정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

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 5

(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5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5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 ····· 6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 6

2. 가업승계 ····· 7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7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 7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 8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9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10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 10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 11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 12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13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 13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 14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 15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 16

3.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 17

(1)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 17

(2)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 ····· 18

4. 부가가치세 ····· 19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19
Ⅱ.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타세제, 국세 제반 분야
1. 소득세 ····· 20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20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20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21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22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22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23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4
(6)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24
(7)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 25
(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 25
(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26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 27
2. 종합부동산세 ····· 28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28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28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 29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30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 30
(4)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 31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 32
3. 기타세제 ····· 33

(1)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법) ····· 33
(2)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 34
(3)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교육세법) ····· 35
4. 국세 제반 ····· 36
(1)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36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36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37
(2)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38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39
(4)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 40

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

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45의3)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적용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A) × (주식보유비율 - B)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B(%): (중소) 10, (중견) 5, (일반) 0 <단서 신설>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좌 동) ○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34의3)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ㅇ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34의3)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의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ㅇ (좌 동)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ㅇ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외거래**	ㅇ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승계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td><td>□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td></tr>
<tr><td>□ 공제한도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2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td><td>□ 공제한도 상향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4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6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1,000억원</td></tr></table></td></tr>
<tr><td>□ 피상속인 지분요건
○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td><td>□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td></tr>
</table>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기간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7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 유지	○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고용 유지 : ❶&❷ 유지	○ 고용 유지 완화
❶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❷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❷ (5년 통산) 100% → 90%
○ 자산 유지	○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 40%
○ 지분 유지	○ (좌 동)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대상) ❶중소기업 및 ❷**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❶중소기업 및 ❷**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50%(상장법인 30%) 이상 → 40%(상장법인 20%) 이상
○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 **7년**	- 7년 → **5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대표이사직 유지**: 7년 → **5년**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 · 68의2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사유** ○ **❶~❻**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❶~❹**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❺~❻**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❶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❷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❸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❺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❻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❹~❻**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기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❶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❷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절차 ○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납부유예 허가 절차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 상속세 징수사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❶~❸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❶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❷ 「**국세징수법**(§9①)」 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❸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주식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납부사유** ○ **❶~❺**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❶~❹**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❺**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❶**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❷**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❹**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❺**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❹, ❺**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기간 : 5년 □ 사후관리 요건 ○ (가업 종사)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❶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❷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부유예 신청 절차 ○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납부유예 허가 절차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 증여세 징수사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❶~❸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❶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❷ 「**국세징수법**(§9①)」 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❸ **증여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 ❶ 또는 ❷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❶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❷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좌 동)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지분 및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 (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대표이사 등 재직 ○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좌 동) - 50% 이상(상장법인 30%) → 40% 이상(상장법인 20%) - (좌 동) ○ (좌 동)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 연부연납 기간 확대 ○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1)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 (좌 동)
○ (예외) ❶~❻은 할증평가 제외	
❶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❶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❷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❹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❺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❻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❷~❻ (좌 동)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자녀공제)** 자녀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공제대상 추가** ○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좌 동)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Ⅱ.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타세제, 국세 제반 분야

1. 소득세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일) '23.1.1.	□ 시행시기 유예 ○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 · 104 · 115 · 118의9, 소득령 §157 · 167의8 · 168 · 169 · 178의8 · 225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 (좌 동)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table>
<tr>
<td>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table>
<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
<tr><td>코스피</td><td>1%</td><td rowspan="3">10억원</td></tr>
<tr><td>코스닥</td><td>2%</td></tr>
<tr><td>코넥스</td><td>4%</td></tr>
</table>
○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td>
<td>
- 100억원 이상
<table>
<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
<tr><td>코스피</td><td rowspan="3">삭제</td><td rowspan="3">100억원</td></tr>
<tr><td>코스닥</td></tr>
<tr><td>코넥스</td></tr>
</table>
○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td>
</tr>
</table>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시행시기 유예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좌 동)
○ (시행시기) ‘23.1.1.	○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 · 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신 설>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좌 동)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 제 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 (좌 동)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적용기간 확대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요건) ❶ & ❷ & ❸ ❶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ㅇ (좌 동)
❷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❷ 5년 → 10년
❸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좌 동)
<추 가>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요건**) ❶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❷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좌 동)
○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 (좌 동)
<추 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table>
<tr><th colspan="3">현 행</th><th colspan="2">개 정 안</th></tr>
<tr><td colspan="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td><td colspan="2">□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td></tr>
<tr><td>과 세 표 준</td><td>2주택 이하</td><td>3주택 이상*</td><td>과 세 표 준</td><td>세 율</td></tr>
<tr><td>3억원 이하</td><td>0.6%</td><td>1.2%</td><td>3억원 이하</td><td>0.5%</td></tr>
<tr><td>3억원 초과 6억원 이하</td><td>0.8%</td><td>1.6%</td><td>3억원 초과 6억원 이하</td><td>0.7%</td></tr>
<tr><td>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td><td>1.2%</td><td>2.2%</td><td>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td><td>1.0%</td></tr>
<tr><td rowspan="2">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td rowspan="2">1.6%</td><td rowspan="2">3.6%</td><td>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td><td>1.3%</td></tr>
<tr><td>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td>1.5%</td></tr>
<tr><td>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td><td>2.2%</td><td>5.0%</td><td>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td><td>2.0%</td></tr>
<tr><td>94억원 초과</td><td>3.0%</td><td>6.0%</td><td>94억원 초과</td><td>2.7%</td></tr>
<tr><td>법 인</td><td>3.0%</td><td>6.0%</td><td>법 인</td><td>2.7%</td></tr>
<tr><td colspan="3">*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td><td colspan="2"></td></tr>
</table>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ㅇ (2주택 이하) 150%	ㅇ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ㅇ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조정
○ (일반) 6억원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1억원 → 12억원
○ (법인) 기본공제 없음	○ (좌 동)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 (대상) 1세대 1주택자 ○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4)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 · 9 ·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❶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❷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❸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세제

(1)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table>
<tr><th></th><th>‘22년</th><th>‘23년~</th></tr>
<tr><td>코스피</td><td>0.08%</td><td>0%</td></tr>
<tr><td>코스닥</td><td>0.23%</td><td>0.15%</td></tr>
</table>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td><td>□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table>
<tr><th></th><th>‘22년</th><th>‘23~’24년</th><th>‘25년~</th></tr>
<tr><td>코스피</td><td>0.08%</td><td>0.05%</td><td>0%</td></tr>
<tr><td>코스닥</td><td>0.23%</td><td>0.20%</td><td>0.15%</td></tr>
</table>
※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 · 8)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 납부기한 합리화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 제>

<개정이유>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3)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교육세법 §5③ · 7)

현 행	개 정 안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 공제 항목 세분화
ㅇ **수입한 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	ㅇ (좌 동)
- **책임준비금** 적립금	-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재보험료	- (좌 동)
□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귀속시기 직접 규정
ㅇ 「법인세법」 §40, §43 준용	❶ 보험료·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하되 ㉠,㉡은 제외 ㉠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귀속) ㉡ 기간 경과 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중도해약한 과세기간**에 귀속) ❷ ❶을 제외한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40, §43 준용 * 신용대출이자, 임대료 등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국세 제반

(1)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⑦)

현 행	개 정 안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특례대상 확대
○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 (대상)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의 명의대여 -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 (좌 동)
<추 가>	- 재산의 실질 귀속자

<개정이유>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⑤)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원칙) 10년* *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 (특례)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ㅇ (좌 동)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4)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	○ (좌 동)
<신 설>	○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 필요 -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 * (국조법 §16④, 국조령 §38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 사업장 소재지

<개정이유> 자료 해외은닉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